

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·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으로
- 도시숲·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,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참여를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로 조문 제정

나.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관련 조항 신설

다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근거 규정

라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정비 및 개정안 제시

마.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